

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공고

2024년도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완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24. 3. 18.

광 양 시 장

1 모집개요

1. 신청기간 : 2024. 4. 8. ~ 4. 19.
2. 총사업비 : 78,500천원 (설치비 50% 지원, 최대지원금 50만원/대)
3. 보급대수 : 160여대(보조금 신청액에 따라 사업량 변동될 수 있음)
4. 보조금 지원 대상

○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가. (개인, 사업자) 보조금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
(법인·단체) 보조금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광양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단체
- 나. 전기자동차 소유자 또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 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 및 자가 주차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 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한 내역이 없는 자
- 마.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중 1명이 동일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제외

5. 보조금 지원 충전기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 등록된 수행

기관에서 생산된 충전기로 OCPP1.6 인증을 거친 제품* 또는 도내 기업에서 생산된 충전기에 한함.

* OCPP1.6 인증을 받은 동종의 충전기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비공용 충전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2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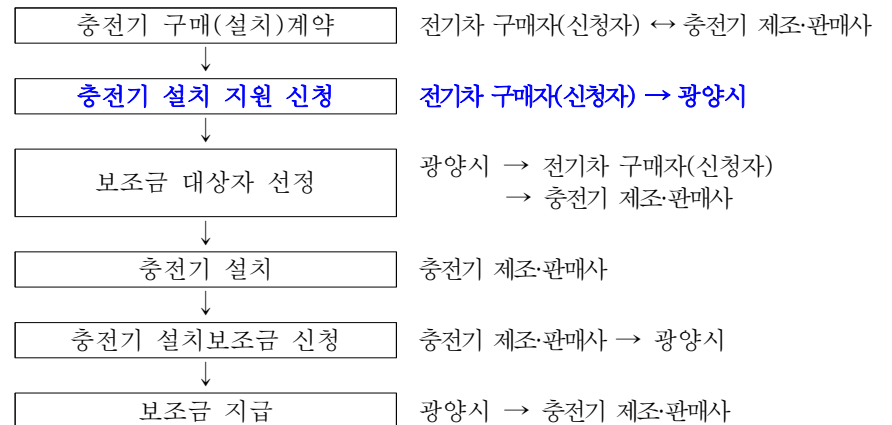
1. 지원기준 :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2. 지원단가 : 설치비 50% 지원 (자부담 50%, 최대지원금 50만원/대)

- ※ 설치비는 취득세 및 한전불입금을 제외한 충전기 구매 및 설치비용만 포함
- ※ 신청인당 1대만 지원 가능

<명칭 정의>

- “전기자동차”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충전기”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완속충전기”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등의 전기를 충전하는 시설로 최대 출력값 7kW이상 40kW미만인 충전기를 말한다.
- “비공용 충전기”란 개인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보조사업 추진 절차



4 구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방법

1. 신청기간 : 2024. 4. 8. ~ 4. 19.

2. 신청서류

구분	개 인	법인 등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이전 30일내 발급분 인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작성방법 예시를 꼭 확인하여 제출 그 외의 용도,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소지 기입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 인감증명서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서식1) - 사업 안내 확인서 (서식2) - 현장점검 확인서 (서식3) - 설치업체 작성 - 충전기 설치계약서 ※ 제품가격·설치비 등 구체적 계약금액 작성 -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확정 증빙서류(교부결정서) - 설치대상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 충전기 설치 이용 승낙서 (서식7) ※ 신청자와 설치장소 소유자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 (인감날인시) 인감증명서, (서명시) 본인서명확인서 첨부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3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 	

3.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방법

- 접수자 : 보조사업자(신청인) ※ 제조·판매사 대리 신청 불가
- 접수방법 : 광양시청 환경과 현장접수
 -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불가
 - 접수시간 :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기간 내 서류 보완 완료 원칙
- ※ 접수시간 외 전달·도착된 서류는 접수불가
- 선정방법 : 기간 내 접수 완료 후, 예산 초과시 우선 순위 선정
 - 1순위(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평균 3개월 납부 금액이 낮은순
 - 2순위(광양시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연속 거주만 인정
- 결과통보 : 완속충전기 설치업체 통보 및 개인별 문자 통지

5 보조금 지급 신청

1. 보조금 지급신청 : 충전기 제조·판매사

- 보조금 지급신청 기간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조금 지급신청 서류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내역
① 보조금 지급 요청서 (서식 4) ② 현장설치확인서 (서식 5) ③ 보조금 정산서 (서식 6) ④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 ⑤ 하자보증증권 ⑥ 세금계산서 ⑦ 완속충전기 취득세(지방세) 납부서 ⑧ 보조금 수령용 제작·판매사 통장 사본 ⑨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8)

- ※ 보조금은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업체(충전기 제조·판매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0. 1. 1. 이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취득세(지방세)를 납부해야 함.

6 보조금 선정대상 및 설치사업자 준수사항

1. 전기차 완속충전기 의무 사용기간 : 2년간

- 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하여, 최소 2년간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의무 있음
- 비공용 충전기는 원칙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책임 있음
 - 다만, 충전기 설치 후 최소 2년간 제품하자보증 등 사후품질 책임은 충전기 제조사에게 있음

2. 비공용 충전기 설치장소 제한

- 충전기 설치 장소는 광양시에만 설치 가능
- 설치장소는 이면도로 및 타인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 등이 아닌 적합한 주차공간 이어야 함.
- 개인 구매자는 거주지 또는 근무 중인 회사, 법인 구매자는 사업장 또는 차고지 등 사업관련 부지에 한하여 설치 가능
- 신청자의 거주지(주민등록 기준)나 근무지(재직증명서, 4대보험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근무지) 외 다른 장소에 설치할 경우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지원 불가 (단, 주민등록지 외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 가능)

3. 완속충전기 설치 방법

-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환경부)」에서 정하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작성, 설치공사 등 절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함.

4.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2024 완속충전기 국가지원 사업과 한전 완속충전기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은 안되며, 추후 중복신청 발견 시 사업을 취소하며, 보조금 지급된 경우 전액 환수
- 전기차 충전기가 이미 설치된 곳은 지원 불가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이후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 충전기 설치장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광양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

-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광양시의 승인 확인

- 붙임
1. [참고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예시
 2. [참고2]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제조·판매사 현황
 3. [서식1]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원신청서
 4. [서식2]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5. [서식3] 현장 점검 확인서
 6. [서식4]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급 요청서
 7. [서식5] 현장 설치 확인서
 8. [서식6] 보조금 정산서
 9. [서식7]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10. [서식8] 청렴이행서약서

[참고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이 용지는 위조 식별 표시가 되어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	서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부동산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기타(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그 외의 용도	거래상대방 등	주소
위임받는 사람	성명	(주)참여기업(반드시 설비 설치 기업과 대표명 기재)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도 ○○시 ○○로 123 (참여기업의 정확한 주소 기입)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발급 신청자)(서명)</div>			
비고			
발급번호		수수료	3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용도, 수임인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 용도란은 부동산 관련 용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에 √ 표를 하고, 거래상대방 등에는 부동산매수인 등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거래상대방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신청합니다.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자동차대용(매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그 용도를 적습니다] 수임인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인 등 수요처에 제출하는 경우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습니다(예시: ○○○ 법무사). 발급 이후에 용도, 수임인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지신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일·문서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특수용지 80g/㎡]

[참고 2]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제조·판매사 현황

업체명	콜센터	업체명	콜센터
(주)휴맥스이브이	1800-3188	신세계아이앤씨	02-3397-1234
스칼라데이터	1544-5376	(주)타디스테크놀로지	02-6941-0609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1600-8025	웰바아이오텍EVC	070-4267-9233
아마노코리아	02-2164-9900	소프트베리	02-6925-4257
엘스리일렉트릭파워	02-6956-9823	(주)펌프킨	031-591-6633
엘에이링크	1660-3175	(주)파워큐브코리아	1833-8014
(주)에버온	1661-7766	태성콘텍	053-856-5188
(주)매니지온	032-431-0066	한화솔루션	1533-3464
(주)씨어스	1522-2640	(주)이지차저	1544-3332
크로커스	1600-2693	쿨사인	02-6295-8055
캐스트프로	070-4855-2090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주)	1877-6546
현대엔지니어링	1833-8777	채비(주)	1522-2573
이브이시스(주)	02-2139-3000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02-3430-1279
GS차지비	1544-4279	한국전자금융	1533-5522
파킹클라우드	1588-5783	(주)이카플러그	031-778-6181
LG유플러스	1660-0365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	1522-1782
E1	02-3441-4114	서울씨엔지	031-910-8586
아이마켓코리아	02-3708-5678	(주)클린일렉스	02-1811-1350
딜라이브	1644-3100	(주)플러그링크	1533-0702
이엘일렉트릭	1600-0274	SK일렉링크	1566-1704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 - 구매 및 지원 - 완속충전기
제품안내에서 열람 가능하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보조금 정산서

사업 내역

사업계획				사업실적			
사업량 (대)	사업비(원)			사업량 (대)	사업비(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위와 같이 2024년도 전기차 비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여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정산 구비서류

- 대상자(신청인) : 자부담 납부 증빙 자(통장 사본 등)
- 참여기업(충전기 제조·판매사)
 - 입금계좌 발급증, 입금표(자부담), 전자세금계산서 등

2024년 월 일

정산자(신청인) 주소: _____
 성명(기관명): _____ (인)인감도장

정산확인자 직명: _____
 성명: _____ (인)

광양시장 귀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충전기 설치신청자와 설치장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작성)

설치주소 (도로명)			
충전기 종류			
설치장소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충전기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충전기 설치 사용 목적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완속 충전기 설치·이용		
충전기 사용기간			
2024년 전기차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에 따라 위 설치 장소에 완속 충전기 설치 및 충전기 이용을 승인하오니, 완속충전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2024. . . 승인(설치승낙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div>			
※ 구비서류 - 서명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날인시 : 인감증명서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광양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광양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광양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40조)
 -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 제39조(벌칙) 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또는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또는 제29조(검사)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성 명(기관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